|  |  |  |
| --- | --- | --- |
| **국가외환관리국의 외환관리개혁을 한층 더 추진하여진실성과 합규성에 대한심의를 완벽히 하는 것에 관한 통지**회발[2017]3호, 2017년1월26일국가외환관리국 각 성,자치구,직할시분국 및 외환관리부,심천,대련,청도,하문,영파시 분국,각 중자(중국 자금) 외국환 지정은행: 외환관리개혁을 한층 더 깊이 추진하고,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하고,실질적 경제발전을 지지하며,무역투자 편리화를 촉진시키고,완전하게 거시적이고 면밀한 관리프레임 하의 자본유동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1. 경내 외환대출 결제범위를 확대한다.화물무역수출 배경을 갖춘 경내 외환대출의 외화결제를 허가한다.경내기구는 화물무역수출로 수취한 자금으로 상환해야 하며,원칙적으로 외화매입을 통한 상환을 허가하지 않는다.2.경내담보 하의 경외대출 자금을 회수하여 경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채무자는 경내에서 대출,지분권투자 등의 방식을 통해 담보한 자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회수하여 경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은행은 경내담보 하의 경외대출에 대한 담보가 이행되는 경우,이와 관련된 외화결제매도는 은행의 자가 외화결제 및 매도에 포함시켜 관리한다.3.다국적기업 외화자금 집중운영관리의 편의를 한층 더 도모한다.경내은행이 국제외화자금 주(主)계좌의 예금을 통해 흡수한 예금에 대해, 거시적이고 신중한 관리의 원칙에 의거하여,직전 6개월의 일평균 예금잔액 50%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경내운영비율을 100%로 조정할 수 있다. 경내운용자금은 은행의 단기외채잔액지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소재하는 경외기구가 보유한 경내 외화계좌의 외화결제를 허가한다.외화결제 후 입금된 외화를 경내에서 사용할 경우, 경내은행은 국경간 거래관련규정에 따라 경내기구와 경내개인의 유효한 상업영수증과 증빙을 심의한 후에 처리하여야 한다.5.화물무역 외화관리를 한층 더 규범화 한다.경내기구는 “수출주체가 수출대금을 수취하고,수입주체가 수입대금을 지불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무역 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해야 하며,적시에 외환대금의 회수업무를 처리해야 한다.외환국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6.경상항목 외화수입을 경외에 예치하는 것과 관련된 통계업무를 더욱 완벽히 한다.경내기구가 각종 사유를 이유로 수출수입 또는 서비스무역수입을 경외에 예치하는 하였으나 <국가외환관리국의 화물무역 외환관리법규 유관문제 배포에 관한 통지>(회발[2012]38호), <국가외환관리국의 서비스무역 외환관리법규 배포에 관한 통지>(회발[2013]30호)등에 따라 외환관리관련등기비안 수속을 처리하지 않았거나 또는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본 통지 발표일로부터 1개월 내 자발적으로 관련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7.직접투자 외화이윤송금 관리정책을 계속적으로 집행하고 완벽히 한다.은행이 경내기구의 미화 5만 달러(5만 달러 불포함) 상당액 이상 이윤의 송금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거래 진실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해당 회차에 송금하는 이윤과 관련된 동사회 이윤분배결의문건(또는 동업인의 이윤분배결의), 세무비안표 원본,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심의해야 한다.또한,유관 세무비안표 원본에 해당 회차에 송금하는 금액과 일시를 추가 기재하고 날인한다.경내기구는 이윤을 송금하기 전에 법에 의거하여 이전연도 결손을 우선 보전해야 한다.8.경외 직접투자에 대한 진실성,합규성 심의를 강화한다.경내기구가 경외직접투자등기와 자금 송금수속을 처리할 때,규정에 따라 관련 심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또한은행에 투자자금출처와 자금용도(사용계획) 상황을 설명하여야 하고,동사회결의(또는 동업인 결의)및 계약서 또는 기타 진실성 있는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은행은 업무전개원칙에 따라 진실성 과 합규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9. 모든 인민폐와 외화의 경외대출에 대하여 관리를 실시한다.경내기구가 경외대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인민폐의 경외대출 잔액과 외화의 경외대출 잔액의 최고 합계액이 전년도에 회계삼사를 받은 재무제표에 명시된 자본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10. 본 통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처벌한다.11. 본 통지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하며,국가외환관리국이 해석을 책임진다.외화국은 정기적으로 정책실시효과를 평가하고, 국제수지상황에 근거하여 정책을 조정한다.이전규정과 본 통지내용이 불일치할 경우,본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각 분국,외환관리부는 본 통지를 받은 후,최대한 신속하게 관할 내 중심지국,지국과 외국환지정은행에 전달하고,또한 성실하게 이를 준수하여 집행한다. |  | **国家外汇管理局关于进一步推进外汇管理改革完善真实合规性审核的通知**汇发〔2017〕3号，2017年1月26日国家外汇管理局各省、自治区、直辖市分局、外汇管理部，深圳、大连、青岛、厦门、宁波市分局，各中资外汇指定银行：为进一步深入推进外汇管理改革，简政放权，支持实体经济发展，促进贸易投资便利化，建立健全宏观审慎管理框架下的资本流动管理体系，现就有关措施通知如下：一、扩大境内外汇贷款结汇范围。允许具有货物贸易出口背景的境内外汇贷款办理结汇。境内机构应以货物贸易出口收汇资金偿还，原则上不允许购汇偿还。二、允许内保外贷项下资金调回境内使用。债务人可通过向境内进行放贷、股权投资等方式将担保项下资金直接或间接调回境内使用。银行发生内保外贷担保履约的，相关结售汇纳入银行自身结售汇管理。三、进一步便利跨国公司外汇资金集中运营管理。境内银行通过国际外汇资金主账户吸收的存款，按照宏观审慎管理原则，可境内运用比例由不超过前六个月日均存款余额的50%调整为100%；境内运用资金不占用银行短期外债余额指标。四、允许自由贸易试验区内境外机构境内外汇账户结汇。结汇后汇入境内使用的，境内银行应当按照跨境交易相关规定，审核境内机构和境内个人有效商业单据和凭证后办理。五、进一步规范货物贸易外汇管理。境内机构应当按照“谁出口谁收汇、谁进口谁付汇”原则办理贸易外汇收支业务，及时办理收汇业务，外汇局另有规定除外。六、完善经常项目外汇收入存放境外统计。境内机构因各种原因已将出口收入或服务贸易收入留存境外，但未按《国家外汇管理局关于印发货物贸易外汇管理法规有关问题的通知》（汇发〔2012〕38号）、《国家外汇管理局关于印发服务贸易外汇管理法规的通知》（汇发〔2013〕30号）等办理外汇管理相关登记备案手续或报送信息的，应于本通知发布之日起一个月内主动报告相关信息。七、继续执行并完善直接投资外汇利润汇出管理政策。银行为境内机构办理等值5万美元以上（不含）利润汇出业务，应按真实交易原则审核与本次利润汇出相关的董事会利润分配决议（或合伙人利润分配决议）、税务备案表原件、经审计的财务报表，并在相关税务备案表原件上加章签注本次汇出金额和汇出日期。境内机构利润汇出前应先依法弥补以前年度亏损。八、加强境外直接投资真实性、合规性审核。境内机构办理境外直接投资登记和资金汇出手续时，除应按规定提交相关审核材料外，还应向银行说明投资资金来源与资金用途（使用计划）情况，提供董事会决议（或合伙人决议）、合同或其他真实性证明材料。银行按照展业原则加强真实性、合规性审核。九、实施本外币全口径境外放款管理。境内机构办理境外放款业务，本币境外放款余额与外币境外放款余额合计最高不得超过其上年度经审计财务报表中所有者权益的30%。十、违反本通知规定的，由外汇局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依法处罚。十一、本通知自发布之日起施行，由国家外汇管理局负责解释。外汇局将定期评估政策实施效果，根据国际收支形势对政策进行调整。以前规定与本通知内容不一致的，以本通知为准。各分局、外汇管理部接到本通知后，应尽快转发辖内中心支局、支局和外汇指定银行，并认真遵照执行。　 　　 |